

서울교육대학교 - 한국발명진흥회

업무교류협정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)와 한국발명진흥회(이하 “진흥회”)는 상호 협력 하에 과학원리의 이해와 창의사고 체험을 통해, 미래의 과학 및 발명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서울교대와 진흥회는 과학과 발명을 융합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창의사고 체험교육을 실시하여, 미래의 과학발명인재를 양성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

- ① 서울교대와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 1. 과학 및 발명(지식재산분야) 교육·연구를 위한 공동 노력
 2.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, 시설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협력
 3. 기타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- ②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 사업 발굴 및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3조(추진방법) 양 기관은 상기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창구를 지정하여 필요사항을 협의 조종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비용 부담)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부담한다.

제5조(정보의 공동활용 및 저작권) 본 협정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성한 각종 콘텐츠 및 산출물은 동 협정의 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상호 활용되어지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그 콘텐츠를 제공한 기관에 있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

- ① 서울교대와 진흥회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서울교대와 진흥회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7조(협의 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제8조(협약기간)

- ①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2년 한다.
- ② 협정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협약기간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협약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정서의 개정 또는,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에 정하도록 한다.

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원본 2부를 작성하며 양 기관장이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3월 15일



총장 송 광 용

송 광 용



부회장 최 종 협

최 종 협